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255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대표 : 성방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13일 충청북도학교급식 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거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덧붙여 도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음
-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은 충청북도내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 안정을 기하는데 있음.

2. 청구조례안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 및 지역과 국내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 나. 학교급식과 관련한 도지사, 교육감, 학교장의 노력 의무규정(제2조)
- 다. 학교급식 등 용어 정의(안 제3조)
- 라. 학교급식 직영원칙 규정(안 제4조)

- 마. 학교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도지사 :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책무
 - 도지사, 시·군자치단체장, 교육감 : 최우선적으로 지역과 국내 우수 농산물 사용 지도·감독 의무
- 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규정(안 제6호)
- 사. 도지사는 식재료구입비 지원 의무화(안 제7조)
- 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통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안 제8조)
- 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안 제9조)
- 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안 제10조)
- 지원규모, 지원대상·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 심의, 의결
- 카. 지정판매업자의 자격 규정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안 제11조)
- 타. 지정판매업자의 의무규정(안 제12조)

3. 주민청구조례안 : 불임

4. 충청북도의견서 : 불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임

6. 표준조례안 : 불임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배양
2.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생산·배분·소비 및 전통식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 발달의 도모
4.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

제3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및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④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 기관으로 한다.

⑤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학교급식의 형태) 학교급식은 해당학교의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과정과 배식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5조(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충청북도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충청북도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학교급식시설설비와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충청북도지사, 시·군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충청북도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⑤충청북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식재료검수 및 의견제시 등 학교급식에 관한 개별 학부모와 학생들의 제반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검수참여절차, 의견제시의 절차 및 보장방법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로 한다.

②지원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벽지지역 학교
2. 영세보육시설
3. 직영으로 전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교
4. 기타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제7조(지원방법)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군 자치단체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한다.

제8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충청북도교육청을 통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시·군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 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충청북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1인
4. 학부모단체 1인
5. 교사단체 2인
6. 농민단체 2인
7.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추천한 2인

③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1인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2. 지원 규모.
3.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4.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정판매업자의 자격 및 신청) ①지정판매업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②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
3. 주요 취급 식재료의 현황 및 품목의 수량
4.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지정판매업자의 의무) ①지정판매업자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농산물 공급내역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충청북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충청북도지사는 지정판매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동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간 판매업자 지정을 할 수 없다.

제13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을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군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및 결산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충청북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지정판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규칙의 제정)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검토 의견서

1. 추진경위

- '03.10.22 : 道 교육위원회에 학교급식조례 제정 청원
- '03.11. 8 :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조례안 심의결과 부결
- '03.12. 1 :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주민발의 조례제정
대표자 증명발급
- '03.12.10 : 道 교육위원회에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발의
- '03.12.10 : 道 교육위원회에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 의결
- '04. 1.26 : 道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현재 심의보류 중
- '04. 7.13~7.19 : 청구서인 명부 제출 및 확인, 열람
※ 확인결과 : 26,885명중 유효 24,610명 / 무효 2,275명
- '04. 8.31 : 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 청구요건 심사, 수리
- '04.10.26 : 충청북도조례 · 규칙심의회 개최
- '04.10.30 : 충청북도검토의견서 도의회 제출

2. 충청북도 검토의견

□ 교육자치단체(교육감)와 일반자치단체(도지사)간 소관 업무 범위의 구분 필요

-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이며 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에 그 역할의 범위가 한정되므로
※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조례안 제5조에서 충청북도가 학교급식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이에 대한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 또한, 제2조·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관련 총괄적인 사항은 교육감의 업무영역이므로 동 조례에서 제외가 바람직함

□ WTO 협정관련 검토의견

-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학교급식 조례안으로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의 용어사용 또는 제도화는 WTO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며, 동 내용이 포함될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예상되므로
- 조례안 제1조·제2조·제3조·제8조·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정지원 대상 등 관련사항 검토의견

-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동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학교급식법상의 급식대상인 학교로 한정하여야 하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고지원 등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5조제2항에서 재정지원 대상으로 급식 시설비를 규정하는 것은, **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식품비 지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 지방재정교부금법(§11⑥)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96추 84)에 의거, 학교 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
- 제7조제1항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우리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26.2%)이며 교육관련 부담 지원금이 상당한 수준(지방교육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 '04년 866억원 규모)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이 바람직함
-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지정판매업자의 선정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납품독점에 따른 특혜의 우려 등이 예상됨
※ 타 시·도 및 표준조례안(행정자치부)의 경우, 지정판매업자 지정·운영 규정이 없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96. 12. 30)

2. “**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 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신설 96. 12. 30)
3.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6. 12. 30)
4.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4조(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82. 3. 20, 89. 12. 30, 90. 12. 27, 93. 12. 10, '01. 1. 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개정 99. 8. 31)

제6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①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93. 12. 10, 96. 12. 30)

②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급식경비부담)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 (개정 94. 6. 17, 95. 4. 6, 97. 4. 29)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 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③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학년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중 도서벽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학년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 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의 3분의 1과 제2항 제2호의 경비
3. 교육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 4. 29)

1.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의 3분의1
3. 교육감이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⑤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급식학교”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한 학교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21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임) ①모든 국민은 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8>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21조 (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99.9.7>

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100分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 예산에 의하여 특별시세 · 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특별시세 · 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시 · 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00(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도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교육장을 통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 · 도 행정부시장 · 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시 · 도 교육청 관련국장
3. 시 · 도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9. 기타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 · 수 · 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 · 군 · 구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시 ·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 · 도교육감은 식품비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 · 감독) ① 시 · 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 · 도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 · 수 · 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